

『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발주 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일반 건설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

- 구미시 발주 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
현행 조례를, 민간중장비업체 수요 증가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
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
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